

2022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세부내용

1.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증진

공정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디지털 경제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와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 분야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행위와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를 집중 점검할 계획임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추진과제	주요 내용
디지털 경제의 혁신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 플랫폼사업자의 자사우대, 앱마켓사업자의 멀티호밍 제한 등 독점력 남용행위 집중 감시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 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반도체 시장에서 장기 계약 강제 등으로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집중 점검
신유형 온라인 플랫폼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 소비자 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 여부 점검 명품 판매 또는 리셀(resell)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청약철회 방해, 반품비용 전가, 신원정보 미제공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모니터링
디지털 구독서비스 소비자 권익 보장 위한 거래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 마련

또한 공정위는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 규범 제도화를 위하여 (i)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과 '전자상거래법'의 전면 개정을 계속 추진하고, (ii)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을 제정, (iii) M&A를 통한 플랫폼의 지배력 전이·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온라인쇼핑·게임 표준약관 개정, 디지털·ICT 품목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 대·중소기업 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i) **자동차 분야**의 하도급거래 실태점검 및 전속거래비중이 높은 **화학 분야**에 대해 감시 강화, (ii) **온라인 유통, 아울렛·복합쇼핑몰**의 불공정행위 점검, (iii) **의료기기·의류·자동차판매 분야**의 대리점거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지자체의 분쟁조정 역할을 하도급·유통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하도급·대리점·가맹·유통분야의 주요 추진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사의 거래 유형에 따라 업무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산업이나 법 위반 행위 유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 추진 과제
하도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집단 1차 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위한 세부절차,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 마련 • 자동차 분야 하도급거래 실태 점검, 전속거래 비중이 높은 화학 산업에서 경영간섭·부당 대금 결정 및 건설 분야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배포하고,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설치하여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대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실태조사를 소업종 실태조사로 확대 개편 • 의료기기·의류·자동차판매 분야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의료기기) 계약서 규정 등의 근거없는 경제상 이익의 제공 강요, (의류) 운송비 등 각종 소요비용의 일방적 전가, (자동차판매) 광고매체 제한 등 대리점의 경영활동 간섭
가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결제 강요 금지조항 확대, 오프라인 이외 온라인 거래까지 감안한 영업지역 보호 등을 위해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 편의점 등 일부 분야에 도입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 • 가맹 정보공개서 등록·공개 프로세스 개선 •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맹점주의 비율을 규정 • 허위·과장정보제공,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 등을 점검하고 빈발하는 불공정유형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온라인 유통업체의 배타적 거래요구,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 변화된 유통환경에서 빈발하는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아울렛·복합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 점검
----	--

3.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인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며, 자금보충약정, TRS 등 계열사 간 채무보증과 유사효과를 가진 **금융상품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i)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 집중 감시, (ii) 총수일가의 지배력 승계 자금 마련을 위해 계열사가 **총수2세** 지배회사에 부당 지원함으로써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행위 집중 감시, (iii)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면탈행위 감시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국세청·금감원 등 관계부처와의 정보공유 등 협업을 통한 감시 및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IT서비스 업종에 대한 내부거래 정보 공개 확대, 상표권 사용거래 정보공개 강화, CVC 등록·운영 과정 점검 및 종합적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구축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불공정·소비자피해 대응

공정위는 일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 팬데믹 경험으로 관심이 높아진 건강·위생분야 불공정행위에 적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OTA(Online Travel Agency)와 숙박앱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의료계종사자의 경우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과제	주요 내용
방역단계 조정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 선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OTA(Online Travel Agency), 숙박앱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중소 숙박업소·여행업계 대상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골프장·장례식장·대학기숙사 등의 이용약관 상 일방적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조항 점검 및 시정
팬데믹에 편승한 건강 관련 불공정·소비자이익 침해 행위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계종사자 대상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행위 점검 건강 기능식품 부당고객유인 예방 위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시행 수요가 확대되는 위생·건강 관련 제품의 검사를 확대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바이러스 차단효과 표방제품 등 안전성 미검증 제품 실태조사 추진

5.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내실 있는 대응 및 피해구제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사건업무 개선 TF' 3개 분과를 운영하여 사건처리방식을 개선하고, 하도급 대금 분쟁에 있어 감정평가 절차를 도입하는 등 신속한 분쟁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하여 대체적분쟁해결(ADR)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등 민사적 구제장치를 유통3법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6. 시사점

공정위의 2022년도 업무계획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경제분야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감시 강화 및 관련 규범 제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한국 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진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22년에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및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은 최근의 ESG 경영을 강조하는 추세와 맞물려 공정위의 주요 정책으로 계속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작년 말부터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담합 규제, 과징금 최대부과율의 2배 상향, 사인의 금지청구제 등 신설된 주요 내용들에 대한 공정위의 법집행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Authors

정영진

02-3703-1776
youngjin.jung@kimchang.com

김진오

02-3703-1261
gokim@kimchang.com

이민호

02-3703-4642
minho.lee1@kimchang.com

고경민

02-3703-1431
kmkoh@kimchang.com

김경연

02-3703-5889
kyoungyeon.kim@kimchang.com

전기홍

02-3703-1618
khchun1@kimchang.com

이준석

02-3703-4797
joonseok.lee@kimchang.com